

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09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관리·운영 중인 서울광역자활센터와 관련하여
- 나.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위탁 적정성 심의 (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) 결과 **적정**으로 결정되었으며,
- 다. 재계약 만료도래로 재위탁 절차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있는 단체(“법인등”)를 선정하여 종합적·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개요

- 위탁사무명 : 서울광역자활센터 관리·운영
- 위탁기간 : 2026. 2. 7. ~ 2029. 2. 6.(3년)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소요예산 : 1,238,515천원('25년 예산)
-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(공개모집)

※ 2025년 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('25.7.18.) : 적정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 근거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5조의10(광역자활센터)
- 「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자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, 제3조(시장의 책무) 및 제5조(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,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,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(조직담당관, 2024.12.)

○ 추진 필요성

-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광역단위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25개 자치구 30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허브기관(컨트롤타워) 역할 수행기관 및 중간지원조직임
- 자활근로사업단(자활기업) 지원 강화를 위한 서울형 자활사업 개발·운영, 자활사업 홍보, 자활생산물 판로 개척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서울광역자활사업 추진이 필요함
- 따라서, 전문적·지속적 자활서비스 공급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·경험이 있는 단체(“법인등”)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다. 위탁사무

- 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취업·창업 및 사업지원
-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각종 지원
-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
- 자활생산물 홍보·판로개척·전시회 개최
-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·경영 지도 등 지원
- 위탁시설의 재산관리 및 기타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설립일자 : 2010.11.9.
- 시설위치 :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(목동 514-18)
- 시설규모 : 1,089.96㎡(건축 연면적 330평)
- 시설구성 : 지상 1층(공용 1층 홀 자활상품전시관), 205호(교육장 및 회의실), 305호(사무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5조의10(광역자활센터)

▶ 제15조의10(광역자활센터) 1항

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,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.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·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「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▶ 제5조(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①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자활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실 자활지원과 김미경 (☎ 2133 - 7559)